

2023 / vol. 26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인증취득 전략

2023. 12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FOODCERTI
ISSUE REPORT

foodcerti.or.kr
1588-055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CONTENTS

- 1 / 머리말
- 2 / 왜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시장인가?
- 4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 8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할랄인증 취득 전략
- 11 /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제언
- 12 / 맺음말

머리말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33호를 발표한 이후 시행규정인 인도네시아 정부규정을 발표하여 인도네시아 유통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민간에서 정부로 권한이 이관되었으며, 할랄인증청(BPJPH)에서 인증을 담당하게 되었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은 할랄인증 표시 의무화, 할랄/비할랄 제품의 분리 등이며, 이에 따라 국내 인도네시아 수출기업은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설명회를 비롯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역시 이러한 홍보에 일조하고 국내 수출기업이 對인도네시아 수출에 애로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본 리포트를 제작하였다.

왜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시장인가?

1. 할랄식품 시장 현황¹⁾

- 할랄시장은 식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의약품, 여행, 패션 등 경제활동 영역 전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시장
 - ('21) 2조 달러 → ('25) 2조 8천억 달러
- 할랄시장의 약 63.4%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부분('21년 1조 2,670억불)도 '25년까지 1조 6,680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
 - * 할랄금융 제외
 - 인도네시아(11.6%), 방글라데시(9.9), 파키스탄(6.9), 나이지리아(6.8)
 - * '21년 기준 글로벌 할랄식품 시장 국가별 점유율

2. 한국 농식품 할랄시장 수출 현황('22년 기준)

- 할랄식품 시장에 대한 농식품 수출액은 9.4억불 규모로 전체 농식품 수출액(85.6억불)의 9.4% 수준
 - * 할랄식품 시장: OIC 57개국에 대한 농식품 수출 규모로 산정
- (주요 수출국)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사우디
 - 인도네시아(245.9백만불), UAE(232.4), 말레이시아(180.5), 튀르키예(38.8), 사우디(32.7)
- (품목 현황)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 커피조제품, 비스킷 등이며, 신선 농산물은 딸기, 감, 배, 포도 순으로 수출

1) DinarStandard, State of the Global Islamic Economy 2022

3. 인도네시아 수출중인 국내 농식품 기업 현황('22년 기준)

○ 279개 업체 170백만불

* 정보공개 동의 업체 기준

○ 가공식품(171개 업체), 신선농산물(84), 사료(6), 펫푸드(6), 종자(5), 주류(7)

○ 가공식품은 전체 품목의 61.3%를 차지하며, 할랄인증 취득 비율은 47.4%

품목	할랄인증 취득(개)	할랄인증 미취득(개)	총 업체수 (개)	인증비율 (%)	비고
가공식품	81	90	171	47.4	
신선농산물	2	82	84	2.4	할랄*
사료	0	6	6	0	
펫푸드	0	6	6	0	
종자	0	5	5	0	
주류	0	7	7	0	하람*
합계	83	196	279		

* 품목 자체가 할랄/하람이 명백한 경우 할랄인증 대상이 아님

** 사료, 펫푸드, 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상 아님

4.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 할랄식품 시장 중 국내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식품시장에('22년 기준)

① 할랄인증 대상임에도 할랄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② 인도네시아 수출중인 업체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할랄인증 취득 필수!!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1.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는 정부차원에서 할랄을 관리하기 위해 2014년 10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할랄제품보장법)’ 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33호를 발표
 - 동 법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성을 관리하는 권한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
- 2019년 5월 할랄제품보장법 시행규정인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31호가 발표되었고, 할랄인증 의무화 적용시기 유예
 -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식품 및 음료의 할랄인증은 '24.10.17.부터 의무화 적용 시행

<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제31호 주요내용 >

- (1) (국가인증)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신청접수 및 인증서 발행 업무 실시
- (2) (할랄인증 의무화)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 제품, 착용 및 사용하는 물품 등 할랄인증 표시 의무화
- (3) (제품 분리) 유통매장에서 할랄/비할랄 매대 구분
- (4) (국제협력 강화) BPJPH의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상호인정 신설
 - * 해당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 가능

- 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기존 정부규정 31호를 대체하는 정부규정 39호를 발표하였으나, 개정 내용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음

2. 할랄제품보장법 주요 내용 관련 조항

- (제4조) 인도네시아 영토에 반입, 유통, 거래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 할랄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a. 할랄인증을받은 제품에 할랄표시(halal label)부착
 - b. 할랄인증을받은 제품의 할랄성유지
 - c. 할랄제품과 비할랄(non-halal) 제품 간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진열 과정에서의 위치, 장소, 기구 분리
- (제46조)
 - (1) 정부는 규제 법령 조항에 따라 JPH(할랄제품인증)의 국제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JPH의 국제협력은 할랄제품 인증, 일치성 평가, 할랄인증 인정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
- (제47조)
 - (1)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은 반드시 본 법에서 규정한 조항들을 따라야 한다.
 - (2) 제(1)항에서 규정한 할랄제품은 해외 할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할랄인증이 제46조 조항(2)의 인정 협력을 거친 경우, 별도의 할랄인증 신청 과정을 요하지 않는다.

3.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2021년 39호 주요 내용 관련 조항

○ (제2조)

- (1) 인도네시아 영토에 반입, 유통, 거래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 금지된 재료에서 파생된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서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
- (3) 제(2)항에서 언급된 제품은 비할랄로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제22조) 할랄제품과 비할랄(non-halal) 제품 간 가공, 저장, 포장, 유통, 판매, 진열 과정에의 위치, 장소, 기구 분리에 대해 기술

○ (제87조~제94조) 할랄/비할랄 라벨에 대한 규정 기술

○ (제119조)

- (1) 정부는 JPH 영역에서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언급된 국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다.
 - c. 할랄인증서 승인
- (4) 제(1)항에서 언급된 국제협력은 국가 간 합의를 근거로 한다.

○ (제122조)

- (1) 제119조 제(2)항 c호에 언급된 할랄인증서 승인에 관한 국제 협력은 할랄인증서 상호승인 협력이다.
- (2) 제(1)항에서 언급된 할랄인증서 상호승인 형식의 국제협력은 할랄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함께한다.

- (제140조) 2024년 10월 17일까지 식품, 음료, 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의 단계화
- (제141조) 그 외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의 단계화

연번	시행년도	해당품목
1	'24.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음료, 도축제품, 도축 서비스
2	'26.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의약품, 의약부외품, 건강보조제 •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공학 제품 • 의류, 쓸 것(머리), 액세서리 등 착용하는 관련 제품 • 가정용 의료용품, 가정용품, 기도용품, 문구류 및 사무용품 관련 제품 • 위험 A등급(저위험)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3	'29.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약품 • 위험 B등급(중위험)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4	'34.1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정신성 약물을 제외한 처방약 • 위험 C등급(고위험)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4.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요약 정리

- ◆ 인도네시아 수출 제품은 할랄인증 필요
- ◆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할랄인증 의무 면제 단, 반드시 비할랄 표시 필요
- ◆ 모든 단계에서 할랄/비할랄 제품 분리 (판매 매대에서도 분리)
- ◆ 할랄인증 의무화의 제품별 단계적 시행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할랄인증 취득 전략

- ◆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취득
- ◆ BPJPH와 상호인정된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 취득

1.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 취득

○ BPJPH 할랄인증 취득 절차



- 각 기관 역할

① **(BPJPH)**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기관으로 할랄제품보장법 기반 규제를 담당하며, 할랄인증기관 역할 수행 (인증신청 접수 및 인증서 발급 업무 담당)

② **(LPH)** 인도네시아 할랄 심사기관으로 BPJPH가 지정 권한 가짐. 대표적인 기관으로 LPPOM MUI가 있으며 할랄인증 심사 역할

* LPPOM MUI : Lembaga Pengkajian Pangan Obat-obatan dan Kosmetika Majelis Ulama Indonesia

① **(MUI)** 인도네시아 율법학자 평의회. 파트와의 역할 수행

* MUI : Majelis Ulama Indonesia

* 파트와 : 어떤 사안에 대해 이슬람법에 위배가 되는지 해석하는 이슬람 판결. 샤리아(이슬람 법률 및 코란)을 기초로 결정

○ 국내에서 접근방법

- 기업 직접 신청 : SI-Halal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신청 가능
 - * SI-Halal 링크 주소 : <https://ptsp.halal.go.id>
- LPPOM MUI 한국지사 활용 : (주)이니할랄코리아 (IniHalal Korea, IHK)
 - * IHK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ihalalkorea.com/>

2. BPJPH와 상호인정된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 취득

○ (재)한국이슬람교(Korea Muslim Federation, KMF) 할랄인증 취득

- 서울 이태원에 소재한 (재)한국이슬람교는 이슬람 종교활동 및 할랄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1994년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활동함
- KMF 할랄인증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KMF 인증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s://kmfhalal.org/>

○ 한국할랄인증원(Korea Halal Authority, KHA) 할랄인증 취득

- 한국할랄인증원은 충북 오송에 소재한 할랄인증기관으로서 2016년부터 할랄인증업무를 시작
- KHA 할랄인증은 이메일 또는 FAX로 신청 가능
 - * KHA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reahalal.kr/>
 - * KHA 이메일 주소 : koreahalal99@naver.com
 - * KHA FAX 번호 : 042-471-0773

3. 한국-인도네시아 인증기관 간 MRA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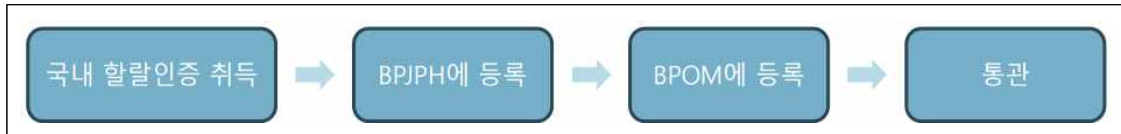
- KMF 및 KHA의 BPJPH와 상호인정 추진 현황
 - BPJPH에 서류제출 이후, 현장심사 진행
 - * KMF, '22.6월; KHA, '22.10월
 - BPJPH 요구사항 조치 완료

- BPJPH와 상호인정 협상 체결을 위한 정부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네시아 종교부 간 할랄식품분야 업무협력 체결('23.9.8.)
 - * BPJPH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기관
 - 할랄제품보장법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규정 2021년 39호 제119조 제4항 '국제협력은 국가 간 합의를 근거로 한다.' 는 요건 충족

- KMF 및 KHA의 BPJPH와 상호인정 체결
 - '2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서명식 진행
 - 이를 근거로 KMF 및 KHA 할랄인증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시장 진출 가능
 - * 서명일로부터 효력 발휘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제언

- 할랄인증 취득이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진출 준비의 끝이 아님



-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 고려

- ① 국내 할랄인증 취득 : 1~2개월 소요

* 인증신청을 위한 업체별 서류준비 기간 추가 필요

- ② BPJPH 등록 : 절차 미공개 상황으로 소요 시간 확인 불가

- ③ BPOM 등록 : 통상적으로 2~6개월 소요

*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인도네시아 식약처

- 할랄/비할랄 표시를 위한 라벨 규정 미공개(BPOM 소관)

- 통관 시, 서류상의 제품과 실제 입항된 제품에 대한 비교 작업 관련 규정 미비

- 인도네시아 BPJPH를 비롯하여 자국 내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미공개 규정이 다수 존재함. 그럼에도 예고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일('24.10.17)에 예정대로 추진 하겠다는 BPJPH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은 반드시 대비가 필요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 ① 변화 또는 정돈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제도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對인도네시아 국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 ②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

맺음말

인도네시아 할랄식품 시장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이 가장 많이 도전하고 있는 新식품수출시장 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이 역경으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아직 명확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 할랄식품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앞으로도 국내 식품수출업체들이 반드시 진출해야 할 시장이다. 따라서 비록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관련 규정들이 미진한 상황이지만, 민관이 한마음으로 이를 대응 및 타개하고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역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할랄식품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하며 본 보고서를 마친다.

FOODCERTI 이슈리포트 (Vol. 26)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비 인증취득 전략

기획 및 작성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식품연구원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1899-0559

자료문의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이현성 (063)219-9382

자료게재 www.foodcerti.or.kr

*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가 작성한 보고서임을 밝혀야 함